

<h1 style="margin: 0;">보도자료</h1> <p style="margin: 0;">2020. 12. 7.</p>	 <h2 style="margin: 0;">양형위원회</h2>	
	담당부서	운영지원단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송영복 판사 (☎ 02-3480-1924)

양형위원회 12/7(월) 제106차 회의 결과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정 의결: 2021. 1. 1. 적용

○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접수 의견 등 양형기준안 대상 여러 의견에 관한 진지한 논의 끝에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할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협조를 유도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 자살 시도” 등을 삭제하여,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 확대 및 유형 분류, 명칭 심의

- 설정 범위 확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의무반치사만 양형기준 설정(현행) → 사업주 및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의무반, 산업안전보건 의무반치사(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 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포함) 모두를 양형기준 설정(확대, 다만 산업

안전보건법위반은 일부 포함)

- 명칭 및 유형 분류 심의: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 환기 위하여,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독립적인 대유형으로 분류함**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검토·심의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의 대체적인 틀과 형량 범위는 유지하되 '수사 협조'를 협조 정도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두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유도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서 "자살, 자살 시도" 등 극단적인 예시를 제외함으로써,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증명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 자체에 공감하려 노력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의견을 대체로 받아들여, 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를 과실치사상 범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대유형으로 분류하고, 범죄군 명칭 역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로 변경 ② 현행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에 한정되어 있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 근로자 등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자체(다만, 일부 포함), ㉡ 사망자가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인 경우, ㉢ 위반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도급인인 경우, ㉣ 최근 신설된 5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규정도 모두 포괄하도록 확대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0. 12. 7. 제10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함. 2020. 9. 14. 확정된 양형기준안의 대체적인 틀과 형량 범위를 유지하되, 양형인자를 개선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발 및 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에 더욱 공감하는 방향으로 변경함. 의결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심의하여,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를 독자적인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함. 2021. 1. 11. 제107차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도출

하여 공개할 예정임

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2021. 1. 1. 시행 예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양형기준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¹⁾	다수범 ²⁾	상습범 ³⁾
1	제작 등	2년6월-6년	5년-9년	7년-13년	7년-19년6월	7년-29년3월	10년6월-29년3월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2년6월-5년	4년-8년	6년-12년	6년-18년	6년-27년	상습 규정 가중 없음
3	배포 등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4년-12년	4년-18년	상습 규정 가중 없음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4년-12년	4년-18년	상습 규정 가중 없음
5	구입 등	6월-1년4월	10월-2년	1년6월-3년	1년6월-4년6월	1년6월-6년9월	상습 규정 가중 없음

· 법정형 동일 범죄에 설정된 양형기준과의 비교(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

구성요건(법조, 법정형)	감경	기본	가중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청소년성보호법 7조①, 무기 또는 5년 ↑ 징역)	3년-5년6월	5년-8년	6년-9년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약취유인(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① 1호, 무기 또는 5년 ↑ 징역)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청소년성보호법 11조①, 무기 또는 5년 ↑ 징역)	2년6월-6년	5년-9년	7년-13년

- 양형기준안 양형인자 주요 특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8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를 5개 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 권고하되, “자살, 자살 시도”와 같은 극단적인 예시는 삭제함으로서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차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할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협조를 유도 (조직적 범죄의 특성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
-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그 위상을 낮추어 반영 정도를 축소함
- 해당 범죄의 특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 신설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	촬영	4월-10월	8월-2년	1년-3년	1년-4년6월	1년-6년9월	1년6월-6년9월
2	반포 등	4월-1년4월	1년-2년6월	1년6월-4년	1년6월-6년	1년6월-9년	2년3월-9년
3	영리 목적 등 반포 등	1년6월-4년	2년6월-6년	4년-8년	4년-12년	4년-18년	6년-18년
4	소지 등	-8월	6월-1년	10월-2년	10월-3년	10월-4년6월	상습 가중 규정 없음

- 양형기준안 양형인자 주요 특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를 7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특별감경인자를 7개 제시
-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다른 범죄에서의 정의 규정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를 포함함
-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누범에서의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도 포함
-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제외함(디지털 성범죄 5개 범죄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	편집 등	-8월	6월-1년6월	10월-2년6	10월-3년9	10월-5년7	1년3월-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월	월	월15일	7월15일
2	반포 등	-8월	6월-1년6월	10월-2년6월	10월-3년9월	10월-5년7월15일	1년3월-5년7월15일
3	영리 목적 반포 등	4월-1년4월	1년-2년6월	1년6월-4년	1년6월-6년	1년6월-9년	2년3월-9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상습범
1	협박	9월-1년6월	1년-3년	2년-4년	2년-6년	2년-9년	3년-9년
2	강요	1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5년-12년	5년-18년	7년6월-18년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양형기준안 형량범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통신매체이용음란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8월-2년 ⁴⁾	8월-3년 ⁵⁾

- 양형기준안 양형인자 주요 특징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어 피해 정도를 양형에 반영

②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주요 내용(2021. 1.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심의 후 양형기준안 공개 예정)

[설정 범위 관련 사항]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현행법 제167조, 구법 제66조의2)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구분	종전 양형기준	양형기준 수정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설정 범위 포함	설정 범위 포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포함
현장실습생 치사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포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포함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현행법 제168조, 제169조)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결정

구분	종전 양형기준	양형기준 수정안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설정 범위 불포함	설정 범위 일부 포함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설정 범위 불포함	설정 범위 일부 포함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	설정 범위 불포함 (법률 개정으로 신설)	설정 범위 일부 포함

-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전부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 설정함

- 설정 범위 포함 범죄 예시: 설비, 물질, 에너지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기구, 설비),

제2호(물질), 제3호(에너지)] / 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 장소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제2호(붕괴), 제3호(물체 낙하, 비산), 제4호(천재지변)] / 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원재료 등), 제2호(방사선 등), 제3호(기체 등), 제4호(계측감시 등), 제5호(단순반복작업 등), 제6호(환기 등)]

○ 양벌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은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진행하지 않고 추후 과제로 함.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① 벌금형은 약식명령으로도 과할 수 있는데, 벌금형 양형기준까지 설정하면 약식명령 청구와 판단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약식명령 처리가 지나치게 지체될 우려가 있음
 - ② 법관의 양형편차를 시급히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은 징역·금고형이었음. 선거범죄는 벌금형 액수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등 중요한 법률효과가 따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올해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연구 진행 중임: 연구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 여부를 정함이 타당

[유형 분류 관련 사항]

-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중요성에 비추어,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와 구별되는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함
- 소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

- 법정형과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징역형의 법정형 : 3년 ↓), ②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징역형의 법정형 : 5년 ↓), ③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징역형의 법정형 : 7년 ↓)로 분류
- 5년 이내의 재범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1.5배 가중하는 서술식 기준을 둬
- 심의·확정된 유형 분류안

산업안전보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 현장실습생 관련 범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제1, 2, 3유형에 포함
- ▷ 제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제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관련 향후 일정]

- 2021. 1. 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심의(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양형기준안 확정·공개
- 2021. 1.~2021. 2. 국가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 2021. 2. 5.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21. 3. 29.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
 -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 양형기준 최종의결

1)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이하 같음

2)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서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하 같음

-
- 3) 특별가중영역에 대한 상습범을 전제로 하고, 가중영역에 대한 상습범이나 기본영역에 대한 상습범인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이하 같음
 - 4) 양형기준의 권고영역이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형의 상한까지만 선고할 수 있음
 - 5) 양형기준의 권고영역이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형의 상한까지만 선고할 수 있음. 다만 다수범의 경우 형법상 경합범 처리에 따라 처단형이 상습범